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0-112호
2020. 12. 17.(목)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공 고 (1)

- 중리행복길 일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공고 제2020-1217호) 1

입법예고 (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1226호) 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1227호) 23

공 람									
--------	--	--	--	--	--	--	--	--	--

중리행복길 일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

「주차장법」 제1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리행복길 일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참고사항

- 입찰대상 주차장의 주변상황 파악 및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익률을 확인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로 인하여 유료운영이 일정 기간 중단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료를 일할 정산하여 감면 고지할 예정입니다.
- 대전광역시 노외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시 위탁자는 시스템 및 부대시설물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수탁자는 인터넷 통신요금 등 운영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주차장 현황 및 조건

주차장명	위 치	급지	면적 (m ²)	주차면수	운영시간	최저입찰가격
중리행복길 제① 공영주차장	중리동 196-10	4	803	34면	전일운영 (00:00 ~ 24:00)	28,66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중리행복길 제② 공영주차장	중리동 197-17	4	391	15면		
중리만남 공영주차장	중리동 180-1	4	512	17면		
중리구봉 공영주차장	중리동 164-5	4	850	30면		
※ 입찰가격은 총수탁기간(2년중) 무료개방일(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수탁료임을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탁기간 : 2년 (2021. 1. 20. ~ 2023. 1. 19.)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 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제

3. 입찰참가자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법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으로서 우리구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4.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 (<http://www.onbid.co.kr>)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온비드” 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집행(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20. 12. 17. 10:00 ~ 2020. 12. 24. 16:00	2020. 12. 28. 10:00	http://www.onbid.co.kr	대덕구청 입찰집행관 PC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 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취소는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기간 내에 우리구에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취소 후에는 동일 물건에 대하여 다시 입찰 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7. 낙찰자의 결정방법

-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1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의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주민등록등본(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사본) 1부.
- 손해(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가입증명서) 1부. / 계약 후 위탁사용 개시 전 제출
- 제출기한 : 2021. 1. 7.(목) 16:00까지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시스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

10. 관리계약 체결

- 가.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 낙찰자의 제출서류를 지정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함
- 나. 계약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포기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로 귀속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유의사항

- 낙찰자는 **2021년 1월 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수탁료 납부 : 계약 체결시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료(=낙찰금액)는 선납 또는 분기별 분할 납부(매분기 개시전월 납부통보에 의거 납부 / 분할납부시 연 1.00%의 이자납부)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주요위탁조건(운영기간, 유료운영시간, 주차요금등)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 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주차요금 및 주차장관리자 실명표시제 실시 등 수탁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는 조건부 선정이오니, **공고문 및 계약서(안)**등을 숙지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입찰 참가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입찰 시 입찰조건 및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와 입찰금 과다제출로 인한 적자발생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문의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1588-5321)
- 계약, 위치,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대덕구청 교통과 (042-608-5293)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 입찰보증금납부여부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 입찰결과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인사교류 시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한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 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의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 조례와 중복·상충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확대함(안 제23조제1항 별표 3).
 - 경조사특별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 : 1일 → 3일
 - 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 축소함(안 제23조제12항).
 - 퇴직준비휴가 일수 : 3개월 → 1개월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총무과(전화 042-608-6052, FAX 042-608-3821, E-Mail man2k@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총무과 담당자 김만식(전화 042-608-65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인사교류 시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한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의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119호, 2020. 10. 20.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 조례와 중복·상충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확대함(안 제23조제1항 별표 3).

- 경조사특별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 : 1일 → 3일

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 축소함(안 제23조제12항).

- 퇴직준비휴가 일수 : 3개월 → 1개월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상충된 근무기강확립, 휴가의 종류, 연가의 분할 허가 및 연가보상비 지급,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병가, 특별휴가 일부, 휴가기간

- 의 초과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안 제4조, 제17조, 제19조제2항 및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3항,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25조, 별표 2).
- 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 마. 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평가 :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 2020. 00. 00. ~ 00. 00. / 20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휴일”을 “토요일, 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무원의 연가가”를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으로,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을 “아니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가는 14시를 기준으로하여”를 “연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을 “연가신청을 받았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4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2항 중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조부모·외증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7조 (당직및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신 설></p>	<p>제7조 (당직및비상근무) ① 토요일, 공휴일 -----</p> <p>-----</p> <p>-----</p> <p>-----</p> <p>-----</p> <p>-----</p> <p>-----</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p>	<p><삭 제></p>
<p>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p>	<p>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p> <p>----- <u>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u> --</p>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연가는 14시를 기준으로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영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아니하게 -----.

<삭 제>

③ 연가는 -----

-----.

④ -----
----- 연가신청을 받았을 -----

-----.

<삭 제>

제19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삭 제>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② 삭 제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삭 제>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특별휴가) ① (생 락)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

제23조 (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또는 조기퇴직을 할 일반직공무원
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
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
는 결근으로 본다.

----- 1-----

-----.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 8.>

제7조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4)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상근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	동일분야 및 1의 3)의 경력은 100퍼센트, 비동일

<p>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축탁·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p> <p>1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축탁·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p> <p>1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p> <p>2)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p> <p>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p> <p>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p> <p>5)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p> <p>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p> <p>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p>	<p>분야는 80퍼센트. 다만, 1의2)의 경력은 50퍼센트</p>
<p>다. 기타 경력</p> <p>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p> <p>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p> <p>4)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p> <p>5)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p> <p>6)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p> <p>7)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p>	<p>동일분야 경력은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2)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 한한다]은 70퍼센트 이내. 다만 7)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p>

비고: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00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당직근무자의 실질적 휴무를 보장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미비한 일부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평일 숙직근무자의 휴무 가능일 변경 및 일숙직자의 휴무 사용기한을 확대함(안 제5조).
 - 나. 비상근무의 종류 및 요령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 및 제23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총무과(전화 042-608-6052, FAX 042-608-3821, E-Mail man2k@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총무과 담당자 김만식(전화 042-608-65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당직근무자의 실질적 휴무를 보장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미비한 일부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일 숙직근무자의 휴무 가능일 변경 및 일·숙직자의 휴무 사용기한을 확대 함(안 제5조).

나. 비상근무의 종류 및 요령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 및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 2020. 00. 00. ~ 00. 00. / 20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일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2조의4제3항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생략)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이 있는 곳을 향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재 인원의 1/3 이상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

수 있다.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2조의4제3항
각 호의 -----.

<삭 제>

<삭 제>

재 인원의 1/ 5이상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
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재
인원의 1/10 이상 비상근무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00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